

# 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61호

## 창원시 영화·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

「창원시 영화·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30일

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

### 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영화·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

### 2. 제정이유

최근 우리나라 영화·영상에 대한 위상이 향상되는 등 영화·영상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원시 영화·영상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영화·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영화·영상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협력체계 구축,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
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1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# 창원시 영화·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9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26.

발 의 자 : 전홍표·김경수·김묘정·김상현·김수혜·김영록  
남재욱·문순규·박해정·백승규·서명일·서영권  
성보빈·심영석·인상우·오은옥·이우완·이종화  
정순욱·진형익·최은하·최정훈·한상석 의원(23명)

## 1. 제안이유

최근 우리나라 영화·영상에 대한 위상이 향상되는 등 영화·영상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원시 영화·영상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영화·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영화·영상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,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
## 창원시 영화·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창원시의 영화·영상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민의 영화·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화”란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.
2. “영화산업”이란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영화산업을 말한다.
3. “영상물”이란 「영상진흥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.
4. “영상산업”이란 「영상진흥기본법」 제2조제2호의 영상산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영화·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)**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영화·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화·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영화·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
2. 영화·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
3.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영화·영상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 방안
4. 영화·영상에 대한 교육, 영화·영상물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

5. 영화·영상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

6. 그 밖에 영화·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영화·영상산업의 지원)** 시장은 영화·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창원시 관내에서 영화·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을 하는 자
2. 창원시를 소재(素材)로 한 영화·영상물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 기반을 둔 영화·영상물의 제작자
3. 영화·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, 후반작업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창원시에 조성하는 자

**제5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영화·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, 영상물·영화제작사, 민간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무의 위탁)**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창원시가 수립·시행하는 영화·영상산업 진흥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화·영상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■ 영상진흥기본법

**제2조 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상물”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·테이프·디스크, 그 밖의 유형물(有形物)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(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)를 말한다.
2. “영상산업”이란 영상물의 제작·활용·유통·보급·수출·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.

**제7조 (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)**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조사·연구·개발 및 보급)**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)**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영상물의 유통 및 보급 촉진)**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영상 전문인력의 양성)**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영상 제작기반의 확충)**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국제 교류 및 협력)**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·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·연구
2.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
3.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**제15조 (영상자료의 보존)**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·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## 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영화”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(公衆)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.
2. “영화산업”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·활용·유통·보급·수출·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**제28조의3(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